

Chapter 7

의료 및 건강



01 코로나-19(COVID-19)

02 의료비 지원

03 자살예방지원

04 정신건강복지센터

05 청소년치료재활센터

06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07 성폭력·성매매 피해 지원

08 임신·출산 지원

09 청소년성문화센터

10. 장애인 의료·재활 지원

01

코로나-19(COVID-19)

질병관리청 www.cdc.go.kr

● 코로나19란?

구분	내용
정의	▶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전파 경로	▶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잠복기	▶ 1~14일(평균 4~7일)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 ▶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후각·미각 손실 등
치료	▶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예방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에는 반드시 실시 ▶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하기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행동 수칙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소 또는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로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 안내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후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 이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들

구분	내용
검사	<p>▶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p> <p>① 의사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문의를 통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 바랍니다. <p>② 조사대상 유증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일반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hr/> <p>▶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 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www.cdc.go.kr)서 선별진료소 확인
치료 및 예방	<p>▶ 치료법이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까지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으로 밝혀진 치료제는 없습니다. - 최근 FDA에서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치료제로 긴급 승인되어 사용중입니다. <p>▶ 항생제가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항생제는 바이러스 감염에는 효과가 없고 세균 감염에 효과적입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합병증으로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균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촉자	<p>▶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p>▶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02

의료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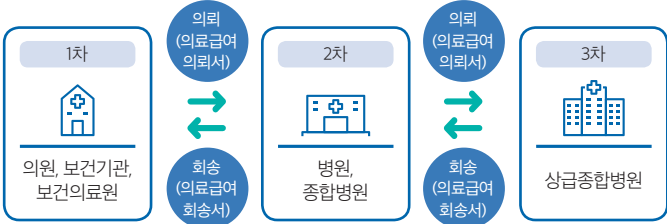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은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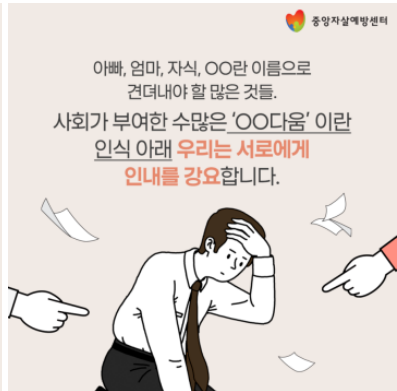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지원내용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본인부담률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등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등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지원절차	1. 시·군·구(읍·면·동)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서 접수·등록	2. 요양기관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자격 확인 후 요양급여 실시	3. 차상위대상자 “안내문 수령” 변동사항 공단 및 관할 시·군·구에 즉시 신고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환별 입원진료비 및 외래진료비(6대 중증질환* 중심)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50%로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6대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지원절차	<table border="1"> <tr> <td>퇴원 후 신청</td> <td>지급신청</td> <td>자격심사</td> <td>개별심사</td> <td>지급결정</td> <td>지급의뢰</td> <td>지급</td> </tr> <tr> <td></td> <td>환자</td> <td>공단 (지사)</td> <td>지역별 실무 위원회</td> <td>공단 (지사)</td> <td>공단 (지사)</td> <td>공단 (본부)</td> </tr> <tr> <td>입원 중 신청</td> <td>지원대상자 확인신청</td> <td>자격심사</td> <td>청구</td> <td>지급결정</td> <td>지급의뢰</td> <td>지급</td> </tr> <tr> <td></td> <td>환자</td> <td>공단 (지사)</td> <td>의료 기관 등 (환자)</td> <td>공단 (지사)</td> <td>공단 (지사)</td> <td>공단 (본부)</td> </tr> </table>	퇴원 후 신청	지급신청	자격심사	개별심사	지급결정	지급의뢰	지급		환자	공단 (지사)	지역별 실무 위원회	공단 (지사)	공단 (지사)	공단 (본부)	입원 중 신청	지원대상자 확인신청	자격심사	청구	지급결정	지급의뢰	지급		환자	공단 (지사)	의료 기관 등 (환자)	공단 (지사)	공단 (지사)	공단 (본부)						
퇴원 후 신청	지급신청	자격심사	개별심사	지급결정	지급의뢰	지급																													
	환자	공단 (지사)	지역별 실무 위원회	공단 (지사)	공단 (지사)	공단 (본부)																													
입원 중 신청	지원대상자 확인신청	자격심사	청구	지급결정	지급의뢰	지급																													
	환자	공단 (지사)	의료 기관 등 (환자)	공단 (지사)	공단 (지사)	공단 (본부)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입원 중인 사람이 의료기관 등에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하려면, 퇴원일 7일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 확인을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기초생활 보장 시설 수급자 ▶ 2종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지원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5%;">1차(의원)</th> <th style="width: 15%;">2차(병원)</th> <th style="width: 15%;">3차 (상급종합병원)</th> <th style="width: 15%;">약국</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종</td> <td>입원</td> <td>없음</td> <td>없음</td> <td>없음</td> <td>-</td> </tr> <tr> <td>외래</td> <td>1,000원</td> <td>1,500원</td> <td>2,000원</td> <td>500원</td> </tr> <tr> <td rowspan="2">2종</td> <td>입원</td> <td>10%</td> <td>10%</td> <td>10%</td> <td>-</td> </tr> <tr> <td>외래</td> <td>1,000원</td> <td>15%</td> <td>15%</td> <td>5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지원절차	<p>▶ 1차 의료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2차, 3차 의료기관 이용</p>  <pre> graph LR subgraph Level1 [1차] I1[의원, 보건기관, 보건의료원] end subgraph Level2 [2차] I2[병원, 종합병원] end subgraph Level3 [3차] I3[상급종합병원] end I1 -- "의뢰 (의료급여 의뢰서)" --> I2 I2 -- "회송 (의료급여 회송서)" --> I1 I2 -- "의뢰 (의료급여 의뢰서)" --> I3 I3 -- "회송 (의료급여 회송서)" --> I2 </pre>																												
신청방법	▶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의료급여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그리고 힘든 감정이 쌓여
어떤 화를 불러올지 모른 채,
'나 힘들어...'란 말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힘든 감정은
참기만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혹시 누가 알아줄까
기대도 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 없습니다.**

얘기하지 않으면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손을 내밀어보세요.
나누면 해결하기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용기 내서 얘기해보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나 요즘 좀 힘들어..."라고.



다음 대신, 도움을 말하세요!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 자살예방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전 연령 누구나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 재활서비스 제공 ▶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및 심리·정서 지지상담 ▶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한 공공·민간·복지기관 협력 지원
지원절차	 <pre> graph LR A[응급상황 대상자] --> B[정신과적 응급 (망상, 환각)] B -- Yes --> C[정신건강복지센터] B -- No --> D[자살예방센터] C --> E[위기관리 및 응급입원] D --> F[자살예방상담 및 위기관리] </pre>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02-3706-0500 / www.spckorea.or.kr) ▶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 생명의 전화(☎1588-9191) ▶ 청소년 상담전화(☎1388)







04

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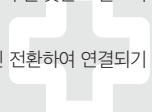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우울 및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전 연령 누구나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각 1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 미만 시/군/구의 경우 1개소,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의 경우 2개소 이상 설치,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추가 설치 (※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검색) ▶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정신증 고위험군 및 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년 대상 정신건강 진료연계 지원, 정신증 회복 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상시문의) ▶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청소년 일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 등 보조 ▶ 그 밖에도 상담과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이용방법	▶ 시/도 및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보장 >  서비스제공
문의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는 어떤 일을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

-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시·군·구의 정신보건센터로 연결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설치 된 곳은 보건소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연결됩니다.
- 야간 및 주말, 휴일은 지정된 관할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광역 정신보건복지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연결되지만 때문에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www.nyhc.or.kr

-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보호, 자립, 교육 등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형 치료·재활 시설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만 9세~18세) ▶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대 및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등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디딤과정(4개월), 오름과정(1개월), 단기과정(4박5일) 제공 ▶ 상담·치료(정신의학적 상담), 보호(거주형 보호시설), 교육(검정고시 지원), 자립지도(작업교육, 체험활동 등) 지원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교육청, 학교, 위(Wee)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을 통해 신청 ※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입·퇴교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문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31-333-1900

자주하는 질문

참가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저소득층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녀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외 일반가정 자녀는 월 3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단기과정(4박5일)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06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복지로 www.bokjiro.go.kr

-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사업은 청년(자립준비청년 포함)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욕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제공인력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이용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상기사업은 2022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07

성폭력·성매매 피해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보호·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구조 ▶ 긴급보호 조치 : 위기개입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2, 119 등 연계조치 ▶ 긴급피난처 운영 : 365일 24시간 임시보호(최대 7일)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의료지원, 보호시설, 상담소 등 유관기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타 보호시설로의 연계가 어려운 경우 30일까지 연장 보호 가능 ▶ 긴급피난 현장상담 지원 : 현장 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보호·상담 및 의료·법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Hot-Line 운영 ▶ 365일 24시간 전화상담원 배치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긴급전화(☎1366) ▶ 카카오톡채널 : 카카오톡에서 1366 검색 후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과 친구맺기 후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상담

- 해바라기센터는 전국에 39개소가 있으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지원이 필요할 때,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내용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위기·응급상담, 추가·지속상담, 상담교육 프로그램 등	법의학적 증거물 확보, 피해자 응급조치 및 치료지원	피해자 진술,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 법률상담 및 자문, 사건 지원
	심리지원	동행서비스	사회적 지원
	심리평가 및 치료, 심리지원 상담, 치료프로그램 등	상담·심리·수사·법률·의료 지원, 이동 지원	외부기관·외부자원 연계, 돌봄비 지원 등
이용방법	▶ 전국 39개소 전화, 내방, 방문, 사이버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이용		
유형	구분	내용	
	통합형(16개소)	대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와 가족	
		특징 : 장기 상담과 치료지원	
	아동형(7개소)	대상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 피해자 가족	
특징 : 외상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치료			
위기지원형(16개소)	대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와 가족		
	특징 : 피해자의 긴급지원과 수사에 주력		

전국 해바라기센터(39개소) 연락처

통합형(16개소)					
지역	위탁병원	연락처	지역	위탁병원	연락처
서울	서울대병원	02-3672-0365	강원서부	강원대병원	033-252-1375
서울북부	삼육서울병원	02-3390-4145	강원동부	강릉동인병원	033-652-9840
서울중부	국립중앙의료원	02-2266-8276	강원남부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033-735-1375
부산	부산대병원	051-244-1375	전남	영광기독병원	061-351-4375
대전	충남대병원	042-280-8436	전북서부	원광대병원	063-859-1375
울산	울산병원	052-265-1375	경북동부	포항성모병원	054-278-1375
경기남부	아주대병원	031-217-9117	경남서부	경상대병원	055-754-1375
경기북서부	명지병원	031-816-1375	제주	한라병원	064-749-5117
아동형(7개소)					
지역	위탁병원	연락처	지역	위탁병원	연락처
서울	연세의료원	02-3274-1375	경기	분당차병원	031-708-1375
대구	경북대병원	053-421-1375	충북	건국대 충주병원	043-857-1375
인천	가천대길병원	032-423-1375	전북	전북대병원	063-246-1375
광주	전남대병원	062-232-1375			
위기지원형(16개소)					
지역	위탁병원	연락처	지역	위탁병원	연락처
서울동부	경찰병원	02-3400-1700	경기서부	한도병원	031-364-8117
서울남부	보라매병원	02-870-1700	충북	청주의료원	043-272-7117
부산동부	부산의료원	051-501-9117	충남	단국대병원	041-567-7117
대구	대구의료원	053-556-8117	전북	전북대병원	063-278-0117
인천동부	인천의료원	032-582-1170	전남동부	성가롤로병원	061-727-0117
인천북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032-280-5678	경북북부	안동의료원	054-843-1117
광주	조선대병원	062-225-3117	경북서부	김천제일병원	054-439-9600
경기북동부	의정부의료원	031-874-3117	경남	마산의료원	055-245-8117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s://d4u.stop.or.kr/>

구분	내용
대상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문의 및 지원 내용 안내 ▶ 삭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 플랫폼별 피해자 자료 삭제 요청 - 삭제지원·모니터링 리포터 제공 - 불법 유통 플랫폼 감시 ▶ 수사 지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증 필요 시 채증 자료 수집 및 정리 - 추가 증거 제출 및 수사과정 모니터링 ▶ 기타 지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지원 및 심리치유 지원 연계 - 무료법률 지원 연계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 365일 24시간 전화상담원 배치
유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 https://d4u.stop.or.kr/)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소지·구입·저장·전시·합성·제작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등을 통해 사회적 단절과 심리적·신체적 외상을 가지고 있는 피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잠재된 역량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s://www.stop.or.kr>

구분	내용	
대상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내용	▶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교육프로그램 및 맞춤형 상담,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성매매 재유입 예방과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구분	내용
	청소년 성장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진단 프로그램 - 치유/치료 프로그램 - 자아존중감향상 프로그램 - 탈성매매 프로그램 - 사회통합 프로그램 - 성주체성향상 프로그램 - 관계형성 프로그램 등
	희망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탐색 - 성인자·성주체성향상 - 예술심리치유 - 인문학, 관계개선 등
	상담 및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적지원 - 의료·법률지원 - 학업, 귀가지원 - 자립, 멘토지원 - 유관기관 연계
이용방법	▶ 전화 상담 교육신청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735-1050 / www.stop.or.kr) ▶ 여성긴급전화(☎1366) 	

08

임신·출산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구분	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쌍태아 이상)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포(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구분	내용
대상	임신헌인사'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 내용	▶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 -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멸
이용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 4번)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

구분	내용
대상	임신헌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인 경우 100만원, 분만취약자 20만원 추가 지원)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이용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숙려기간은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구분	지원 내용	지급 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50만 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35만 원
	미혼모가족 복지 시설 입소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 원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최대 70만 원	
이용 방법	▶ 시·군·구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09

청소년성문화센터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성교육·상담과 문화 활동을 통해 체계적이고 자기 주도적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전문 성교육기관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아동·청소년·양육자·청소년 관계자 등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프로그램<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관 성교육(다양한 체험교구를 활용한 교육 운영)- 찾아가는 성교육(성교육이 필요한 기관에 방문하여 교육 진행)▶ 문화활동<ul style="list-style-type: none">- 캠프, 캠페인▶ 성교육 상담 및 연계<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심리·성행동·성문제 관련- 성폭력 피해·가해 상담 등
이용방법	온라인 및 전화 문의
문의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58개소) 연락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시립아해청소년성문화센터	02-2677-9220	부산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051-558-1224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02-338-0376		부산청소년성문화센터	051-303-9622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02-950-9650~4		탄생의신비관청청소년성문화센터	051-508-1808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02-2204-3170		탄생이동형1청소년성문화센터	051-508-1308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02-3012-1318		탄생이동형2청소년성문화센터	051-508-1308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02-2051-1375	대구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053-653-7755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02-2207-7480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053-657-1388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02-823-7942	울산	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032-446-1318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2-522-1388
	부평구청청소년성문화센터	032-500-2250		광산구청청소년성문화센터	062-973-9553
경기	경기도청청소년성문화센터	031-475-3253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042-222-8847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031-475-3253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042-520-5088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031-954-8050	강원	강원도청청소년성문화센터	033-255-6651
	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031-954-8050		강원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033-255-6651
	부천시청청소년성문화센터	032-663-1318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033-655-1318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031-8015-3900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033-745-1318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031-251-1822	제주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4-760-6451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031-548-1318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4-728-3486
안양시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031-360-3088				
충북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043-258-8001	충남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041-592-1388
	충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043-258-8001		충남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041-406-7000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043-856-7816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041-337-1585
전북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3-463-1230	전남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061-554-1318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3-251-1318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1-272-1318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3-834-1399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070-7733-1319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3-532-1388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1-745-0222
경북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054-436-0218	경남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055-832-9273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054-246-1004		경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055-711-1342
	경북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054-858-7179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055-716-0311
	경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054-858-7179			

● Q1. 피임을 하면 정말로 임신이 안되나요?

A : 예, 그렇습니다. 피임의 효과 및 종류에서 나온 표에서 보듯 피임하지 않은 경우 임신실패율이 85%인 반면 적절한 피임법을 사용하면 임신실패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피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구불임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신이 의심되면 곧바로 산부인과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Q2. 피임약은 안전한가요?

A : 예, 그렇습니다. 피임에 의한 합병증보다는 원치 않은 혹은 원하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합병증이 훨씬 치명적이고 발생빈도도 높습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상태, 환경, 각 피임법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되도록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피임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Q3. 피임약을 먹으면 여드름이 잘 생기거나 있던 여드름이 더 심해진다고 하던데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경구피임약의 새로운 이점 중에 여드름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여드름 감소의 효과를 나타내는 피임약은 특정 황체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어야 하므로 피임효과와 더불어 여드름 감소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당한 약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10

장애인 의료·재활 지원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장애인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요양)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장애검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 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5만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지원 -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받지 않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발달재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중복장애 인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피료실 등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Chapter 8

7141

01 청소년 상담 1388

02 문화누리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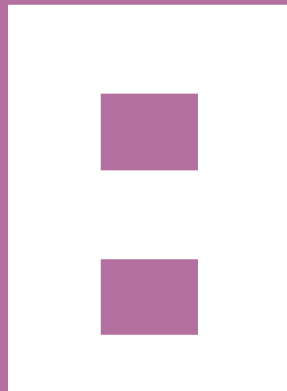
03 긴급복지 지원제도

04 무료 소송 지원

05 채무조정제도

06 상속포기제도

07 병역 감면(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01

청소년상담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www.cyber1388.kr

-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위기에 이르기까지 1388로 전화하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 만 9~24세 상담이 필요한(고민있는)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 관계, 학업 성적, 진로 등 고민이 있을 때 ▶ 가정·학교 폭력, 성폭력·성매매 피해 등을 당했을 때 ▶ 가출해서 갈 곳이 없을 때 ▶ 기타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방법	청소년 전화	청소년사이버상담	청소년모바일문자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번없이 1388 (또는 지역번호+1388)누르고 전화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상담 홈페이지(www.cyber1388.kr) 로그인 후 1:1채팅상담실 혹은 게시판상담실에서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 수신자번호에 "00001388"입력 후 고민전송 • (카카오톡) '청소년상담1388'을 검색하여 카카오톡플러스 친구 맺기 후 상담
※ 대면 상담도 가능(전국 230여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동반자」: 청소년상담 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위기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상담과 정서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입니다.			
문의	[전화상담] 국번없이 1388 [문자상담] 00001388	[사이버상담] www.cyber1388.kr [카카오톡상담] #1388 플러스친구맺기	

02

문화누리카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 www.mnuri.kr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구분	내용
발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사용금액	▶ 연간 개인당 10만원 한도 ※ 당해 연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됨
사용방법	▶ 공연, 영화, 전시관람, 국내여행, 4대 프로 스포츠 관람 등 사용가능 ▶ 주민등록표 상 같은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대표카드로 카드 잔액 합산하여 이용 가능 ※ 단,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합산 불가
신청방법	▶ 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 접속을 통한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신청문의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03

긴급복지 지원제도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긴급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일 이내-총 48시간 이내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소득·재산 기준(기준 총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소득 : 기존 중위소득 75%(1인기준 1,371천원, 4인 기준 3,657천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역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준		최대횟수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원/월)		6회	
			구성원 수	지원 금액		
			1인	474,600		
2인			802,000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회)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 거처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처 제공	(원/월)		12회
					1~2인	
대도시	387,200			643,200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원/월)		6회		
		입소자 수	지원 금액			
		1인	535,900			
		2인	914,200			
	3인	1,182,900				
	4인	1,450,500				
신청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자립선배 수기



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 의료비지원으로 2차례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2차례 모두 할머니께서 요추골절로 수술 받으셨던 적이 있는데 이 때 긴급지원을 받았습니다. 최근 1년간의 통장내역과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챙겨 담당 시군구청에 가서 긴급지원 담당 주무관에게 검토를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200만원을 상회하는 입금 기록이 있으면 사용처와 사유에 대해 조사합니다. 계좌 잔액은 500만원 이상 있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에 따라서, 질병, 상해에 따라 지원되는 최고 한도를 해당 시군구청에서 알려주시니 치료비용에 대해 중간정산을 하면서 지원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면서 치료 받길 바랍니다. 저는 300만원 한도로 2차례 받았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시군구청에서 병원으로 공문을 보내게 되고 원무과에 정산할 때 공문 확인만 되면 바로 퇴원할 수 있습니다.

혹여, 비급여 항목이 많은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의료비 부담 때문에 현재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긴급 의료비지원을 받아 치료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미용목적은 안 됩니다. 교정, 성형이 안 된다는 거죠. 순수 치료 목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덧붙여 긴급 의료비지원만을 믿고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지 마시고 실비, 건강보험을 꼭 가입해서 질병, 상해에 대비하세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니 일찍 보험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2018 교육비지원사업 대상자(남, 대학생)

자립선배 Tip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엔 긴급 지원을 제외하고 있으니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지 확인 후 지원할 것을 권장합니다.

04

무료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보호대상아동,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자부담)
무료법률 구조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가사사건 : 승소가액이 3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형사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 가정·소년·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 성범죄·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자변호사건 ▶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아동 사실 확인원 ▶ 각 대상자 증빙서류 : 수급자증명서, 중위소득 125%이하 증빙서류, 주장사실 입증자료 ▶ 청년미취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132)

05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채무조정제도 종류

구분	내용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대학생·미취업청년지원 특별프로그램 - 지원대상 :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 지원내용 : 채무감면(개인워크아웃 기준), 상환유예(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신청비용(5만원) 면제
법원	▶ 개인회생 - 가소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 파산면책 -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www.ccr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www.ccrs.or.kr

06

상속포기제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

-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유가족)에게 자산과 빚 일체가 넘어오는 것을 뜻합니다. 부채가 많을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통해 빚의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므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음.
신청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포기신고서 작성, 서명날인 후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신고서 기재 사항><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www.ccrs.or.kr

Q. 상속채무만 포기할 수 있나요?

A.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고 싶어 하지만,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07

병역 감면(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병무청 www.mma.go.kr

- 병역 감면은 아동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 병역 감면(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개요

구분	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현역, 보충역, 예비군복무 면제) <p>* 전시근로역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p>
신청시기	▶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제적등본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제적등본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확인서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 민원신청 <p>「병무민원포털(https://mwpt.mma.go.kr)-병역판정검사-전시근로역 편입원 신청」</p>
참고사항	▶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지원입영가능